제287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의 회 사 무 국 위 원 회 제 안

#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제인	반연원	일일	2025.	5.	15.
제	안	자	의회운영우	l원.	회위원장

###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 안 번 호

제안연월일: 2025. 5. 15.

제 안 자: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 1. 제안이유

5분자유발언 신청 방식에 일부 필요사항을 개선·보완하여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도모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회의 실시간 중계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시민들의 알권리 충족과 의정활동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5분자유발언 관련 문구 수정(안 제37조의2제2항 ~ 제3항)
-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회의 실시간 중계에 관한 사항(안 제52조의2)

#### 3. 개정조례안: 붙임

####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의2제2항 중 "간략히 기재하여 의장"을 "의장"으로 하고, 같은 조제3항 중 "신청순서에 의거 의장"을 "의장"으로 한다.

제3장제6절의 제목 "회의록"을 "회의록 및 중계"로 한다.

제3장제6절에 제5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2조의2(정보통신망을 통한 중계) ① 의장 또는 위원장은 비공개 대상 이외에는 의회의 의사를 의회 홈페이지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실시 간으로 중계할 수 있다.

② 중계는 본회의 및 위원회의 회의(공청회·청문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를 포함한다.)를 대상으로 한다.

####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7조의2(5분자유발언) ① (생	제37조의2(5분자유발언) ① (현행		
략)	과 같음)		
② 5분자유발언을 하고자 하는	②		
의원은 늦어도 본회의 개의일			
전일까지 그 발언취지와 요지를			
<u>간략히 기재하여 의장</u> 에게 신청	<u>의장</u>		
하여야 한다.			
③ 5분자유발언의 발언 의원 수	③		
와 발언순서는 <u>신청순서에 의거</u>	<u>의장</u>		
<u>의장</u> 이 정한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6절 <u>회의록</u>	제6절 <u>회의록 및 중계</u>		
<u>&lt;신 설&gt;</u>	제52조의2(정보통신망을 통한 중		
	계) ① 의장 또는 위원장은 비		
	공개 대상 이외에는 의회의 의		
	사를 의회 홈페이지 등 정보통		
	신망을 통하여 실시간으로 중계		
	<u>할 수 있다.</u>		
	② 중계는 본회의 및 위원회의		
	회의(공청회·청문회·행정사		
	무감사 및 조사를 포함한다.)를		
	대상으로 한다.		

##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83조(회의규칙) 지방의회는 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을 회의규칙으로 정한다.